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개혁 방향 및 시사점

황인창 연구위원, 이아름 연구원

요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확대 및 감세정책과 더불어 금융규제완화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2017년 2월 금융규제완화를 시사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s)을 공표하고, 2017년 4월 예정된 오바마 정부의 퇴직연금 관련 규정인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 강화조치' 시행을 연기함.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개혁은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보이고,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적 협력 및 공조가 약화되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금융규제개혁 방향은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① 미시적·거시적 금융 규제 강화, ②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③ 국제적 협력 및 정책 공조 강화로 요약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주택시장 붕괴로 인한 서브프라임 시장의 부실에서 촉발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관성(interconnectedness)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막대한 피해를 끼침.
-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 국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 제고,¹⁾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²⁾에 대한 규제 도입,³⁾ 거시건전성정책(macprudential policy)⁴⁾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임.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규제 사각지대로서 시장충격을 확산, 증폭하는 역할을 한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및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 시장에 대한 개혁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함.
- 마지막으로, G20 정상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⁵⁾를 설립하여 국가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1) 금융기관이 외부 환경의 급격한 악화에도 제 기능을 잃지 않도록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하도록 요구.
 2)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3)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및 부실 시 효과적인 정리 방안 마련.
 4)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책체계.
 5) Financial Stability Board.

국제기준을 강화하기로 함.

-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됨.

■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당사국인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에서 독자적인 금융규제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⁶⁾을 공포(2010년 7월)하고, 이 법을 기초로 세부적인 개혁을 법제화하여 시행함.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는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⁷⁾를 설립하여 시스템리스크 감시, 대형 금융기관 규제 강화,⁸⁾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영역 분리(볼커룰⁹⁾) 등을 추진함.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¹⁰⁾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통합하고 강화함.
-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장외파생상품시장 참여자 규제를 강화함.¹¹⁾
- 부실 금융기관 정리절차 확립을 목적으로 파산할 때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자체정리계획(living will)¹²⁾’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함.

■ 하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확대 및 감세정책과 더불어 금융규제완화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 특히, 「도드-프랭크법」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및 영업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실물지원 능력 및 의지를 크게 위축시켜 미국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 주장함.
-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융규제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아 금융규제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선 및 취임 후 내각 구성·금융규제와 관련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및 대통령지침(presidential memorandum)¹³⁾ 등을 발표함.

6)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7)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8) SIFI를 지정하여 추가적인 자본건전성 규제를 부과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9) Volcker rule.

10)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11) 장외파생상품들이 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도록 유도하여 시장참여자들이 자본 및 증거금 규제를 받게 함.

12) 은행들이 경영 위기를 맞아 파산 수순 과정일 때 자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미리 마련한 계획에 따라 은행들을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됨.

13) 행정명령보다 낮은 단계의 행정지시임.

■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후 주요 경제 관련 장관 인선에서 규제완화 및 감세를 지지하는 기업인 출신(월가 및 대기업 등) 인사를 다수 지명함.

-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스티브 므누신(Steven Mnuchin)은 투자은행(Goldman Sachs)에서 17년간 근무한 뒤 헤지펀드(Dune Capital Management)를 창립하는 등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경력을 쌓아옴.
- 상무부 장관 지명자인 윌버 로스(Wilbur Ross)는 세계적 금융그룹(Rothschild) 출신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로 현재 사모펀드회사(WL Ross and Co.)를 운영하는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자임.
-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앤드루 퍼즈더(Andrew Puzder)는 패스트푸드 기업(CKE Restaurants)의 CEO로 최저임금 인상과 초과 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에 반대한 대표적인 인사임.

■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 재검토를 통한 금융규제완화를 시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s)¹⁴⁾에 서명함.

- 동 행정명령은 미국 금융시스템 규제의 핵심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인들에게 독립적인 재무의사결정·노후대비·개인자산 축적 등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시스템 위험 및 시장 실패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 및 금융시장 활기를 촉진함.
 - 자국 및 해외 시장에서 미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국제금융규제 협상 및 회의에서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함.
-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재무부는 기존 법규들을 재검토하여 120일 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예정된 오바마 정부의 퇴직연금 관련 규정인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 강화조치’ 시행을 연기하라는 대통령지침(presidential memorandum)¹⁵⁾을 작성함.

-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자신의 인센티브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수수료가 높은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신의성실의무에 관한 법규를 제정함.
 - 퇴직연금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고객이 지급해야 할 수수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한 규제에 금융회사가 퇴직금 투자 등에 대해 자문할 때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시 하도록 함.

14) 「Core Principles for Regulating the United States Financial System(Executive Order 2017-02762)」 참고.

15) 「Fiduciary Duty Rule(Presidential Memoranda 2017-02656)」 참고.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 규정 시행을 180일 동안 연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 유예기간 동안 규제 영향에 대한 경제적·법적 분석을 수행해야 함.
 - 트럼프 대통령은 동 규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 및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자문에 대한 접근성 축소·수수료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함.

■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까지 「도드-프랭크법」을 대체할 구체적인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¹⁶⁾이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임.

- 동 법안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연방규제 완화, 볼커룰 폐지, 재무구조가 건전한 은행들¹⁷⁾에게 스트레스 테스트 면제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도드-프랭크법」에 포함된 다수의 금융규제강화 규정들을 완화함.
-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 비용·편익분석을 의무화하고 예산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됨.¹⁸⁾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우선 정책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적 협력 및 공조가 약화되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kiri**

16) 공화당의 켈 헨설링(Jeb Hensarling)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2016년 6월 발의하고, 9월 하원은행위원회에서 가결된 금융규제개혁법안임.

17) 단순자기자본비율 10%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들.

18)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국장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국을 폐지한 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Consumer Financial Opportunity Commission)로 대체하자는 내용도 포함됨.